#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96 발의연월일: 2020. 11. 5.

발 의 자:이형석·윤후덕·이병훈

민형배 · 홍성국 · 권칠승

이용빈・조오섭・박 정

문진석 · 김민기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는 독립법인으로서 전국적으로 1천 300여개에 달하는 금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7월 운용 자산이 200조원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서민금융으로 자리 잡았음.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과 금고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회장의 권한이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임원선거 과정에서 중립적인 외부 통제 장치가 없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한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은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사무 의무위탁단체에 해당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 사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시행하고 있음.

반면, 새마을금고는 위탁선거법상 임의위탁단체에 해당하여 선거사 무 위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다, 선거사무의 선관위 위탁시에도 선거운동의 방법이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현행 선거관리 사각지대로 인해 후보자가 선거기간에 회원에게 불법 적인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각종 폐단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농협·수협 등의 선거와 같이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단서 신설 및 안 제64조의2제6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고의 임원 중 이사장의 선거관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제6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제23조의2 단서 중 "이 사장"은 "회장"으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고,"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중앙회장 선거관리의 의무위탁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 사유가 발생한 이사장선거 및 중앙 회장선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금고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는 임원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u>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u> 에	<u>구·시·</u> 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이하 이 조에서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라 한다)
	다만, 금고의 임원 중 이사장의
	선거관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
	<u>다.</u>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 ⑤ (생 략)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	6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	
19조제8항, 제20조제2항, 제21	
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제13호·제13호의2·제	
14호·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	

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6항 사"는 "감사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⑦ ~ ⑩ (생 략)

-----. <u>이 경우 제23</u>조의2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회 단서 중 "이사장"은 "회장"으 장, 부회장과 상근이사"로, "감 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회"로 보고,----⑦ ~ ⑩ (현행과 같음)